

가 정 통 신 문

성실(誠實)

제2022-17호

교무실 070-7097-0520, 행정실 070-7097-0504, 팩스 031-499-9431 www.jeongwang.ms.kr

2022학년도 학교 설명회 및 학부모회 총회 개최 안내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학부모님 댁내 희망찬 좋은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 변화될 학교 모습과 교육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학교 설명회 및 학부모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1년간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학부모회 임원 선거도 실시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2021.11.2.개정)' 와 관련한 학부모회 규정 개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려고 합니다. 개정 내용은 [붙임]의 신·구 대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학부모회 총회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래 위임장과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회신서를 절취하여 3.8.(화)까지 학생편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22년 3월 18일(금) 15:40

2. 장 소 : 정왕중학교 다온관(체육관) 및 각반 교실

3. 내 용

가. 교육활동 안내 및 각종 연수

나. 학부모회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선출

다. 전년도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학부모회 규정 제·개정 등

라. 담임교사와 상담

2022. 3. 3. 정 왕 중 학 교 장

정왕중학교학부모회장

-----< 절취선 >------

2022학년도 학부모회 총회 위임장 및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회신

■ 학부모회 총회 위임장

학생				학부모		총회 참석 여부(해당란에 ○표)	
학년	반	번호	성명	관계	성명	참여함	참여치 못함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022학년도 정왕중학교 학부모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고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일

학부모: (인)

정왕중학교 학부모회장 귀하

■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2021.11.2.개정)'와 관련한 정왕중학교학부모회 규정 개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개정 내용은 <붙임> 참조)

│ │ 개저에 도이하니다	개저에 도이하지 아스ilFi ()
□ 개정에 동의합니다.()	□ 개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① (생략) ②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5조 (임원 등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	<삭제>
<신설>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⑤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위하여 대의원회 추천으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 선출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제6조 (임원의 임기) <신설>	제6조 (임원의 임기) ③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대의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 결정으로 보궐선거를하지 않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 (학부모회의 조직)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신설>	제8조 (학부모회의 조직)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학부모회, 기능별학부모회를 둔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학부모폴리스, 학교급식모니터링을 둔다.
 제9조 (총회) 신설>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10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총회) ③ 회장은 총회의 원활한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안건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⑥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u> ,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사전투표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회신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임원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 보고	제10조 (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2. 학부모회 예·결산 보고 3. 학부모회 감사 보고 4. 학부모회 규정 개정 5. 학부모회 임원 선출 6.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제12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 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	제12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발의 2. 학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보고 사항 3. 학부모회 활동 계획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5.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6. 임시총회 소집요구 7.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7조 (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재정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② 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

구할 수 있다.